

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3년 9월 14일
복 지 건 설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년 9월 5일, 금천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23년 9월 5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4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
제1차 복지건설위원회(2023년 9월 14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,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제3항에 따라 그 기한을 5년 연장하고, 현행 조례의 어문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 (안 제2조제2항)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(안 제5조제2항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추병수

나. 검토의견

1) 개정 이유

- 본 개정안은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임

2) 주요 내용

- 안 제2조제2항에서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함

기존	연장
2023년 12월 31일	2028년 12월 31일

다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주차장 운영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재정계획 심의 절차를 이행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